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허 동 민

나. 생년월일: 1977.02.13.

다. 소 속: (주)대신감정평가법인 본사

(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89 3층 301호, 신당동, 무궁화회관)

2. 징계내용

가. 징계종류: 업무정지 2년

나. 효력발생일: 2023.04.21.~2025.04.20.

다. 사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,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3년 04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